



이 인영 대표이사  
(주)오푸스펠

**인명이 끊임없이 희생되는데,  
아직도 관련법 개정과 보완을 밥그릇싸움이라 치부할 것인가?**

**붕괴사고, 법규 개정 요구를 아직도 밥그릇싸움이라고?**

또 붕괴사고!

지난해 7월21일, 천호동 리모델링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인부 두 명이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후 mbc에서 관심을 가지고 방송출연 요청이 있어 고민 끝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건축구조물 붕괴사고의 제도적 원인 분석 및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2003년에 작성하였고, 구조설계 및 안전진단 업무를 30년 이상 해오며 느꼈던 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 관련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방송에서 나는 방송을 마무리 하려는 엄성섭 앵커의 마지막 closing announcement를 자르고 끼어들어 한마디 더 하였다. 그냥 마무리하기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마지막 부탁은 ‘이러한 사고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이고,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는 어느 개인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으니 언론에서 심층 취재하여 특집으로 보도하고, 사회적으로 issue화 하여야 한다.’ 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생방송이어서 시간에 쫓긴 앵커는 별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를 서둘러 하고 끝을 맺었다. 방송이 끝나고 돌아오며 역시 언론의 생리상 issue가 있을 때만 불나방처럼 와-하고 달려들었다 이삼일만 지나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겠구나. 하긴 매일 매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리고, 방송에서 예견하였듯이 반년도 안 되어 또 다른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2012년 1월 12일,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날 오전 10시가 조금 지난 시각, 10시부터 시작된 회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내가 서울시와 강남구 건축위원회와 안전진단 위원으로 자주 만나고 통화하던 강남구청의 간부 직원이었다. 평소와 달리 가라앉고 다급한 목소리로 인하여 나는 긴장하였다. 예고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 7층 건물 철거 중 붕괴로 1명 사망 1명 중태!’**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자주 이러한 안타까운 보도를 접해야 하는가.

통상 언론에 보도되는 이러한 사고는 인사사고가 수반된 대형 사고와 정말 재수 없이 언론의 안테나에 잡힌 사고에 한한 것 이다. 이는 발생하는 유사 사고의 극히 일부이며, 보도되지 않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고 현장은 본사에 보고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얼마나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지 건설현장 종사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건축구조기술사회 정책위원장 및 부회장직과 각 기관의 자문위원을 수행하며, 이러한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이때 馬耳東風(마이동풍)이란 단어의 뜻을 실감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어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다.

아! 어떻게 100층 이상 건축물을 시공하는 작금의 현장 감리규정이 구조전문가(구조기술사)의 참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2-3층 건물이 일반적일 때 만든 옛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대형화 되어가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건축물 철거작업을 전문가의 계획과 감독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나마 유일하게 규정화 되어 있는 것은 일정높이(31m)와 일정면적(일반건축물 30000제곱미터, 다중이용시설 5000제곱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형식상의 법이 있을 뿐, 구조적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감독 절차가 전무하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위에 언급한 규모와 용도 이외의 것들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건축물의 철거는 그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고 아무나 달려들어 두드려 부수면 그만이다.

적어도 대형 backhoe(철거장비)가 지상에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높이(약8-10m)이상의 건축물 철거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가(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검토서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 공사 및 철거작업 중에도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는 이러한 외관상 절차적 문제 외에, 기존 건축물 골조공사의 부실이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붕괴현장을 관찰한 전문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 건축물의 경우 20년 전 최초 공사 때부터 사고의 단초를 잉태하고 있었다. 우선 급한 철거시의 계획에 관한 규정 보완도 당연히 중요하나, 골조 공사 시 품질을 감독하는 구조 감리업무에 구조 전문가가 관여 할 수 없는 20년 전의 감리관련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우리나라 건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체계가 보완, 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 사고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중한 인명이 끊임없이 희생되어 나가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법의 개정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며 미룰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